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4. 14 선고 2021가단1011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2. 3. 24.

판 결 선 고 2022. 4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7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23,437,0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3,437,041원 및 그중 14,814,745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F 주식회사, 주식회사 G, H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다.

나. 원고는 E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20,095,809원 및 그중 원금 14,814,74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은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2. 20. 확정되었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03876호).

다. E는 2015. 10. 8.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원고는 2020. 8. 11.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21,849,226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(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202613),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.

그런데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늦어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. 10. 8. 이전이라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1. 1. 14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. 8. 11. 위 가압류로 인해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5다57974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지영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가평군 , [도로명주소] 경기도 가평군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및 일부기와지붕 4층 연립주택

1층 415.27㎡(5세대)

2층 418.47㎡(5세대)

3층 418.47㎡(5세대)

4층 380.99㎡(4세대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

84.73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가평군

대 854㎡

2. 동

소

대 2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2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. 876분의 48.36

